## C - 114 - 2020

- (라) 차량 운행 중 따라오는 차량보다 속도가 저속일 경우 우측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 운행 및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 할 것
- (마) 차량은 항상 정비하여 운행 중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
- (바)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여야 하며,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)의 영향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 할 것
- (사) 기타 도로교통법 제 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를 준수할 것
- (13) 운전자는 후진하는 경우 운전석에서 차량의 후방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후진하여야 한다.
- (14) 운전자는 토사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하는 경우 변속레버를 정지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5) 차량의 하부 수리, 점검, 부속장치의 장착 및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(가)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.
  - (나) 협착재해 방지를 위하여 <그림 17>과 같은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
- (16) 운전자는 주차시에는 <그림 18>과 같이 바퀴구름 방지조치(고임목 등)를 하여 야 한다. 경사지에 정차하는 경우 운전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<그림 17> 안전지주(안전블럭) 사례



<그림 18> 바퀴구름방지(고임목)사례

(17) 운전자는 적재물을 하역하는 경우 싣거나 내리는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, 적재